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

-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재위탁 보고 -

제 안 설 명 서

2020. 10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경제지원과]

-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재위탁 보고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경제지원과장

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본 규정에 따라 우리 구는 동물보호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.
- 또한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구조·보호조치 제외 동물인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2020. 12. 31.자로 「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」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물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보고 드립니다.

□ 그간의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현재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의 동물보호 업무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모두 위탁 운영 중이며, 달서구를 포함한 동, 남, 북구는 (사)대구유기동물보호협회(대표자: 임규호, 달서구 박물관옆 동물병원 원장)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현재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시설은 동구 금강로 151-13에 위치하고 있으며, 최대 수용 마리 수는 120마리 정도로(개 100마리, 고양이 20마리) 중·대형견에 대한 별도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

※ 2015~2016년 사업 최초 지정 후 2년 단위 2회 재지정

※ 2018년 6월부터 야간 유기동물 포획 업무 추가

○ 구에서는 관내 유기유실동물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보호 제외대상인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사업을 통한 개체수 조절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, 입양 지원을 통하여 입양률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향후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2020년 12월 31일 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2020년 11월 중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, 2021. 1. 1.~2022. 12. 31.까지 2년간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.

○ 현재까지는 동물보호업무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같은 단체에 위탁 운영하였으나, 2018년부터 동물보호업무에 유기유실동물 입양 업무가 추가되었고(국비 예산 지원), 2021년도에는 중성화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집 TNR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량(350마리→500마리 이상)을 대폭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동물보호 업무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위탁 주체를 각각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○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「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」 재위탁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「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」 재위탁 보고

의 번 호	안 0082086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제출일자: 2020. 10. 16.
제 출 자: 달서구청장
(경제지원과장)

1. 제안이유

- 「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」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 운영코자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위탁 업무 사항

- 1)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운영
- 2) 길고양이 중성화사업

나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: 2년(2021. 1. 1.~2022. 12. 31.)

- 위탁내용

- 유실·유기동물 보호조치 및 입양 지원 관련 업무
-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

- 위탁운영자 선정방법: 공개모집 후 지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
- 「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」 제5조
-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

라. 민간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우리 구는 현재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지 않아, 관련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함.
-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통하여 유기·유실 동물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입양 지원을 통하여 적정한 보호·관리, 동물 복지 업무 추진 필요
- 보호 제외 대상인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에 따른 개체수 조절로 길고양이 수 적정유지 및 장기적인 번식률 감소 효과 기대
- 동물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
- 공개모집 후 재위탁 시 민간기관에 공정한 기회균등 및 경쟁성 강화,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- 민간위탁 계획: 붙임 참조
- 관계 법령
 - 「동물보호법」 제14조,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, 제15조
 - 「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」 제5조
 - 「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」 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
 - 「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」 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
 -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」 제10조
 -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및 제4조의2

-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-

달서구 동물보호사업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계획

- ▶ 반려동물 사육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동물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통해 민원 불편 해소 및 도심환경 개선
- ▶ 기존 동물보호센터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

I

관련근거

- 동물보호법 제1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
- 동물보호법 제1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등)
- 대구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)
-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
-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

II

동물보호사업 필요성

【유기동물 보호】

- 유기동물의 거리 배회로 인해 주민들에게 공포감 조성
- 도로에 진입하여 차량 교통사고 유발
- 유기동물로 인한 인수공통전염병(광견병) 발생 우려
- 유기동물의 신속한 포획 및 보호조치로 동물복지에 기여

【길고양이 중성화】

- 소음 및 배설물, 쓰레기봉투 훠손 등 길고양이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 지속 증가
- 길고양이 무한번식으로 개체수 통제를 위한 중성화 수술 절대 필요
 - 암컷은 연 2~4회 임신, 기간은 약 60일로 1회 4~6마리 출산
 - 중성화 수술로 생식기능을 제거하여 개체번식 및 소음을 억제하고 질병을 예방

III

추진방향

- 유기동물의 효율적 포획 및 보호관리
-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위탁 협약처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
- 부상동물 및 가축전염병 감염축 치료관리로 동물보호 조치
-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유기동물 감소,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 홍보 전개

IV

그 간의 민간위탁 현황

■ 민간위탁 단체 및 위탁기간

- (사)대구유기동물보호협회: 2015. 1. 1.~2020. 12. 31.(공개모집, 재지정 2회)
- (재)한국동물보호협회 : 2012. 1. 1.~2014. 12. 31.(공개모집, 재지정 2회)

■ 최근 3년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,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현황

연도	계	보 호 두 수				입양 지원	길고양이 중성화	사업비 (천원)	비고
		계	개	고양이	기타				
2018	1,105	708	412	287	9	180	217	134,790	
2019	1,176	708	367	316	25	161	307	186,125	
2020	843	466	226	232	8	84	293	187,970	10월 현재

V

세부추진 계획

1. 추진일정

- 운영자 모집 공고 : 2020. 11. 2.~11. 16.(10일이상)
- 지정신청서 접수 : 2020. 11. 17.~11. 20.
- 지정위원회 개최 : 2020. 12. 4.(예정)
- 지정 및 계약 체결: 2020. 12월 중

2. 신청자격

【유기동물 보호센터】

-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[별표4]의 기준에 충족하는 동물보호시설을 구비하고
- 전담 구조(포획) 인력을 보유한 대구광역시 소재의 기관이나 단체 중
 - 「수의사법」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·운영하는 동물보호소
 -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
 -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
 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

【길고양이 중성화사업】

-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설기준[참고1]을 충족하는 대구광역시 소재의 기관이나 단체 중
 -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필수 요건: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중성화 수술 가능한 달서구 소재 동물병원 8개소 이상 참여
 - 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을 위한 회복실 보유
 - 고양이 포획 · 방사 인력(달서구 상시 전담인력 1명 확보) 및 차량(1대 이상), 포획(방사) 장비(생포용 덫 10개 이상) 확보

3. 위탁운영 지정조건

- 위탁기간: 2021. 1. 1.~ 2022. 12. 31(2년간)

■ 업무내용

- 유기동물 신고 접수(평일 및 주말 · 공휴일 포함 24시간)
- 신고 접수된 유기동물의 구조(포획)·운송
- 보호동물의 공고
-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(보호관리일) 동안의 보호 및 관리
-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,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
-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(TNR)
- 기타 동물보호관련 업무 중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

■ 보호 및 중성화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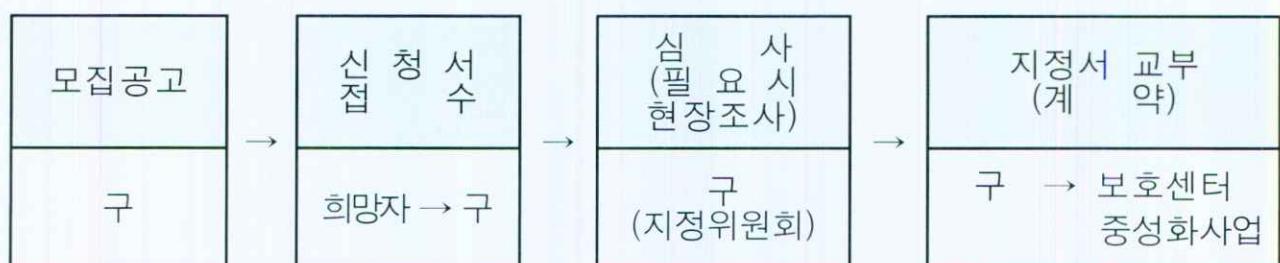
-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서 내버려진 동물
단,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로 정한 고양이는 제외되나 구조 · 신고 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는 포함
-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
-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 ·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
- 중성화 대상: 길고양이 민원 발생 다발지역 및 집단 서식지(재개발 지역 등)

■ 소요경비

-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보호관리비 지급
- 축종별 보호관리비 단가
 - 야간 및 휴일 유기동물구조비: 1,475천원/월(인건비 및 유류대)
 - 개, 고양이: 100,000원/두
(단, 인식표나 내 · 외장형칩을 통해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50,000원/두)
 - 기타 축종: 100,000원/두
 -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(TNR): 150,000원/두
(단, 보호기간 미준수 등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20,000원/두)
 - 기타 입양지원비 및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비(질병관리비)는 市 · 區 및 운영기관 등의 협의에 의하여 경비 산정
- 2021년 예산금액(예정)
 - 동물보호사업(입양비 포함): 156,000천원(국·시비 34%, 구비 66%)
 -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: 75,000천원(국비 12%, 시비 12%, 구비 76%)

4. 위탁 운영자 지정

■ 지정절차



모집공고

- 공고기간 : 2020. 11. 2.~11. 16.(10일이상)
- 모집방법 : 대구시 및 구·군 홈페이지 게시
- 공고문(안): [붙임 1]

신청서 접수

- 기 간: 2020. 11. 17.~11. 20.
- 장 소: 달서구청 경제지원과(7층)
- 제출서류
 1.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정신청서 각 1부[붙임 3]
 2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[별표4] 및 길고양이 중성화시설 기준[참고 1]의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
 3. 동물의 구조·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
 4. 동물의 구조·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
 5. 동물의 구조·보호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) 1부
 6. 사업계획서 1부[붙임 3]
 - ※ 사업계획서는 시설 내부 및 구조(포획) 전담인력과 장비의 보유여부를 상세히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할 것
 - ※ 동물의 진료 등을 위탁한 경우 계약서,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 첨부
 - ※ 건물·시설(장비)·인력현황 등 제출 시 사용권한 증빙서류 포함

위탁운영자 지정위원회 개최

- 일 시: 2020. 12. 4. 예정
- 지정위원회 구성안: [붙임 4]
- 심사기준: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[별표 4] 및 길고양이 중성화시설 기준[참고1]의 기준 충족 여부 등
- 심사방법
 - 자격요건 미충족 업체(단체)는 심사에서 제외하며, 각 심사대상 업체가 사업별 1개일 경우는 지정위원회 미개최
 - ※ 자격요건 충족여부, 시설기준 등을 조사 후 적법할 시 자동 지정
 - 신청업체(단체) 설명회, 질의응답, 지정위원 간 자유 토론 후 위원 개인별로 심사(안) [붙임 5], 평가표[붙임 6,7]에 의거 신청업체(단체)별 순위 부여
 - ※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실시
 - 1순위를 많이 받은 업체(단체) 순으로 최종 순위 결정

- 동순위가 나올 경우에는 동순위 업체(단체)에 한해 재심사함(상대평가)
- 선정과정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심사결과는 공개하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지정업체(단체)를 제외한 신청자와 지정위원의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

■ 지정서 교부 및 계약

- 지정서 교부 및 계약[붙임 8]일: 2020. 12월 중
- 지정된 업체(단체)가 계약 전 사업포기 및 계약 후 계약 파기할 경우, 심사평가 차 순위 점수를 받은 자와 순차 계약 체결
- 계약내용은 지정된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작성 가능
- 계약내용 공증: 공증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
- 지정내용 공고: 구 홈페이지

■ 사후 관리감독

- 지정 취소 등(공통사항)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동물보호법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동물보호법제15조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
 - 동물보호법제8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를 위반한 경우
 - 동물보호법제22조(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)을 위반한 경우
 - 동물보호법제39조제1항 제3호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조치의 이행 등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 -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및 길고양이 중성화관련 사업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
 -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

【동물보호센터】

-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 감독, 지도 실시
 - 동물보호 관리대장의 기록유지 등 계약사항 성실 이행 여부
 -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 및 관리상태 등

【길고양이 중성화사업】

- 길고양이 포획 및 관리방법 수시 확인
 - 포획두수 계획보다 1.3배 이상의 포획 덫을 동일한 지역에 설치하여 한번에 포획
 - 포획시간은 길고양이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을 이용하고 포획 덫 설치 후 1~2시간 이내에 포획 유무를 확인
 - 포획자는 포획일시, 장소, 특징 등을 기록(포획 덫 포함)

※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(受胎) 혹은 포유(哺乳)가 확인된 개체, 기존에 중성화된 개체는 즉시 제자리 방사

○ 중성화 수술 및 방사 관리

-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입원·보호 조치
- 중성화 수술 및 처치 표준 매뉴얼 준수
- 중성화 수술이 된 고양이는 마취된 상태에서 왼쪽 귀 끝부분을 약 1cm 자르는 방법(국제적 공통방식)으로 표식
- 수술된 고양이는 시술한 수의사가 회복 결과를 면밀히 판단하여 방사시기를 결정(암컷 72시간, 수컷 24시간 이상 경과 후)

VI

행정사항

- 재위탁 달서구의회 사전 보고: 2020. 10월(제274회 임시회: 10. 27~11. 6)
-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: 2020. 11. 2~11. 20
- 지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: 2020. 11.~12월
- 위탁운영 계약 체결 및 공증: 2020. 12월
- 위탁기간동안 평가 및 지도·감독 철저

【 관 계 법령 】

□ 동물보호법

제1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 ①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15조,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, 제21조, 제29조, 제38조의2,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, 제41조의2, 제43조,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·보호에 필요한 조치(이하 "보호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하며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·보호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, 2017. 3. 21.>

1. 유실·유기동물
2.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
3.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·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

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

제13조(구조·보호조치 제외 동물)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"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(中性化)하여 포획장소에 방사(放飼)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.
<개정 2013. 3. 23., 2018. 3. 22.>

제15조(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)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.
<개정 2013. 3. 23.>

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8. 3. 22.>

1.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

2.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
3.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
4.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5. 사업계획서

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,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<개정 2018. 3. 22.>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

제10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(개정 2017. 5. 22.)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 5. 22.)

③ <삭제 2015. 2. 23.>

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. (개정 2017. 5. 22.)

제4조의 2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
2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4.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구의회에 보고한 경우

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[신설 2019. 5. 21.]